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순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심사에 필요한 선행기술의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로서 심사관이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8. 13. ~ 9.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심사의 순위) ①·② (생략) <u><신 설></u>	제9조(심사의 순위)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지정한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u>